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26. 7.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5백만원 및 과태료 641백만원 부과
임직원 (9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통보 3명 주의 6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일임업자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부, 압구정WM센터, 강남선릉센터, 상무WM센터, 광주센터는 2021.2.23.~2024.11.10. 기간 중 7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신증권(주)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 대신증권(주) 심사부 및 상품솔루션부는 2020.5.15.~2023.11.30. 기간 중 부동산PF 사업장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SPC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사모사채)이 투자대상인  등 27개 사모펀드(설정액 4,794억원)를 일반투자자 718명(2,603억원)에게 판매하면서
- 대신증권이 PF 대출채권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SPC와 매입확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모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사모펀드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펀드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여 그 이해관계를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대신증권은 2018.10.22.~2022.5.17.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舊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를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음

(1)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소속 직원 131명은 2018.10.22.~2022.5.1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등 13개 펀드를 판매(172건, 57.2억원)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

- 대신증권 소속 직원 24명은 2018.10.23.~2022.5.1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등 13개 펀드를 판매(27건, 7.9억원)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24개월)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투자권유를 한 이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는 등 투자성향 파악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②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위반

- 대신증권 소속 직원 등 111명은 2018.10.22.~2018.10.3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를 판매(142건, 47.1억원)하면서, 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등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투자권유 한 사실이 있음

③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 위반

- 대신증권 소속 직원 3명은 2018.10.24.~2018.10.29.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를 판매(총 3건, 2.2억원)하면서, 1건(0.1억원)은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없이 임의로 기존 정보를 연장하거나, 2건(2.1억원)은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하여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라.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미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주) 고객솔루션부는 2020.2.7.~2025.2.1. 기간 중 ○○○○○○○○○○○○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6개의 RMS사*에 담보관리시스템 사용료 총 18.3억원을 지급하면서

* 대출기관 연계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을 받은 고객계좌에 대해 담보비율 점검,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담보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 사용료를 책정(총 29회)하여, 대신증권(주)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